

1. 개정이유

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매장문화유산이 아닌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발견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,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대비훈련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704호, 2023. 9. 14. 공포, 2024. 9. 15. 시행 및 법률 제20077호, 2024. 1. 23. 공포, 2024. 7. 24. 시행)됨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를 위한 서식 등을 신설하고, 화재 등 대비훈련의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화재 등 대비훈련의 실시 및 결과 조치(안 제2조의3 및 제2조의4 신설)

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화재 등 대비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.

나.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서식 등 신설(안 제49조의2 및 별지 제81호의2 신설)

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를 위한 서식을 신설하고, 발견신고를

접수 받은 기관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, 제2조의4 및 제4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화재등 대비훈련의 실시)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“훈련주관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화재등 대비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화재등 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, 훈련장소, 훈련내용, 훈련방법,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,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14조의5에 규정된 훈련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화재등 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참석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⑤ 제1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참여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기관이 부담한다. 다만,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.

제2조의4(화재등 대비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)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·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
2.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법 제14조의2 화재등 대응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·보완
3.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
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치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9조의2(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) ① 법 제61조의2 및 영 제38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1호의2 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38조의3제3항에서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1.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신고서 사본
2.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사진

별지 제8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의2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------	------	------

① 신고인	성명
	주소
(전화번호 :)	

② 일반동산문화유산 종류	③ 명 칭	④ 수량
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

⑤ 재 료	⑥ 구조·형태	⑦ 크기
-------	---------	------

⑧ 현재 상태

⑨ 발견 일시

⑩ 발견 장소

⑪ 유래 또는 전설

⑫ 발견 경위

⑬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의2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제1항 해당여부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 가 유 산 청 장 귀하

첨부서류	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의4제1항 관련 자료(⑬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의2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제1항 해당여부 해당되는 경우)
유의사항	1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 2.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, 절취,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.

작성 방법

- ① 신고인
 -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.
 - 발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.
- ② 일반동산문화유산 종류: 도기·자기, 지·의류, 철기, 석기, 목기 등의 분류에서 선택합니다.
- ③ 명칭: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모양과 재질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명칭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 적습니다.
- ④ 수량: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량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(예: 자기-3점 / 철기-2점 등)
- ⑤ 재료: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재가 무엇인지에 따라 흙, 돌, 철, 나무, 종이, 천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⑥ 구조·형태: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모양이 파편인지 온전한 형태인지를 구분하고, 모양새와 구조에 대해 적습니다.
- ⑦ 크기: 가로, 세로, 높이를 기본으로 하되, 부정형(不定形)인 경우 대략적인 크기를 적습니다.
- ⑧ 현재 상태: 표면의 훼손 상태, 발견된 장소 주변의 상태, 발견 시의 상태 등을 적습니다.
- ⑨ 발견 일시: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적습니다.
- ⑩ 발견 장소: 발견한 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(주소 및 위치)를 적습니다.
- ⑪ 유래 또는 전설: 발견한 곳에 대한 기존의 구전(口傳) 내용 등을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.
- ⑫ 발견 경위: 문화유산을 발견하게 된 배경, 방법, 사유 등을 적습니다.
- ⑬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의2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제1항 해당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

처리 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 고 인	경 유 기 관	처 리 기 관
	경찰서, 제주특별자치도, 특별자치시 및 시·군·구	국 가 유 산 청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3(화재등 대비훈련의 실시)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“훈련주관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화재등 대비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화재등 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, 훈련장소, 훈련내용, 훈련방법, 훈련참여인력 및 장비,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14조의5에 규정된 훈련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화재등 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참석자에게 훈련</u>

<신 설>

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⑤ 제1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참여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기관이 부담한다. 다만,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.

제2조의4(화재등 대비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)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이나 개선·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
2.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법 제14조의2 화재등 대응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·보완
3.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
<신 설>

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치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9조의2(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) ① 법 제61조의2 및 영 제38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1호의2 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38조의3제3항에서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1.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신고서 사본
2.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사진